

# 근대계몽기 법 담론과 그 균열의 양상

-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

임 회 록\*

차 례

I. 근대 신문매체와 ‘문명개화’ 담론	III. 법 담론의 내면화와 담론 실천의 외부
II. 법 담론의 재배치와 담론 주체의 균열	1. 법 담론의 내면화를 통해 동포애를 실천하는 국민 되기
1. 법 담론의 재배치를 통해 평등한 국민 만들기	2. 규율되지 않는 사적인 욕망 -담론실천의 외부
2. 잔존하는 유교질서-담론주체의 균열	IV. 근대 계몽기-역동적인 생성의 장

## I. 근대 신문매체와 ‘문명개화’ 담론

근대 계몽기에 근대사회로의 변모를 모색하면서 개화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였다. 1876년 한일수호조약 이후 제1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돌아온 김기수가 <일동기유>(日東記遊)에서 “(일본에는) 소위 신문지라는 것이 있어 날마다 활자 인쇄를 하는데, 신문이 없는 곳이 없고 공사(公私)의 견문과 가항(街巷)의 담설(談

\* 동아대학교 강사

說)을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사방에 비전(飛傳)한다”<sup>1)</sup>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근대적 신문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짝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일신문』 3호 논설에도 신문은 국내외 형세를 백성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회로애락을 같이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장치이고, 또한 유익한 말을 많이 함으로 백성을 깨우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2)</sup> 즉 신문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를 상상하게 하고 백성을 계몽시켜 근대적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대민족국가를 상상하는데 인쇄매체의 발달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앤더슨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신문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과 국문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기존 담론의 재배치와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3)</sup>

근대 계몽기에 법 담론 역시 신문을 통해 재배치되어 새로운 담론으로 생성되었다. 갑오경장 이전의 법은 백성들에게 억압 장치로 인식되었다. 법의 권위에 승복하여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법에 순종한다는 의식이 만연했다.<sup>4)</sup>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법은 더 이상 억압 장치로만 인식

1) 차배근,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 『언론과 사회』, 제14호, 1996년 겨울, 13쪽, 재인용.

2) “그러한즉 상하원근이 정의를 상통하며 너의형세를 자세히 탐문하여 다가 국중에 반포함과 회로이락을 일국갓치하게 흠은 신문에 지나는 것업스니 이것이 일은바 신문이 합심에 관계됨이라 신문이 나라에 이갓치 크게 관계 되는 배니 우리 동포들은 부디 범연히 보(시지)말고 지삼 유의하여 열심히 하는말이 뉘(계) 유익할 말인가 생각들 하여보시오”(『미일신문』3호, 1898, 4, 12, 논설).

3) 이에 대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윤형숙 옮김, 나남출판사, 2002)의 2장-3장 참조.

4) 조선시대에는 많은 법전이 편찬이 되었지만 법에 대해 천시하는 관념이 있었다. 양반들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예의,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고 법은 상천(常賤)에나 관계되는 것으로 천시하여 법을 언급하는 것조차 사족(士族)의 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법의 집행도 양반계급이 아닌 중인계급에서 담당하였다(조규창, 『법과 신뢰』,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김인영 편, 소화, 2002, 90쪽).

되어서는 곤란했다. 근대 법은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근대적인 법의 설치와 시행, 그리고 법률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법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근대적인 법에 관한 담론을 생성해서 백성들에게 내면화시키려고 했다.

이 글에서는 『미일신문』을 텍스트로 당시의 법 담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일신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sup>5)</sup> 특히 『미일신문』연구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최현식의 글 정도이다. 그는 「근대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이라는 글에서 근대 계몽기에 “『미일신문』담당자”들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신문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 민족국가를 만들고 근대적 국민을 호출하는데 전제조건이 법률이며 “『미일신문』담당자들은 ‘법률’의 제도화를 통해 조선의 근대민족국가의 전환과 백성의 국민으로의 전화를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현식의 글은 “『미일신문』의 ‘논설’과 ‘잡보’란에 실린 ‘서사적 논설’<sup>6)</sup>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는 말처럼 『미일신문』전체를 대상으

5) 이진구, 「개화기신문의 여론형성에 미친 영향-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 최현식, 「근대 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2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황정현, 「『미일신문』소재 단형서사문학연구」,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문학 연구』, 소명, 2005. 이상은 『미일신문』을 소재로 한 단위논문이고 이외에 근대 계몽기의 신문과 신소설의 연관관계를 살피는 정선태(『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와 김영민(『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 소명, 2005)등에서도 『미일신문』에 실린 단형 서사물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6) ‘서사적 논설’이라는 용어는 김영민이 근대 계몽기에 존재했던 서사양식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김영민은 그의 책(『한국 근대 소설사』, 솔, 1997, 23-48쪽 참조)에서 근대적 서사 양식이 근대 계몽기에 발간된 신문들에 실린 단형 서사물

로 한 것은 아니다. 최현식은 김영민이 엮은 『근대 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sup>7)</sup>을 텍스트로 한 것이다. 『민일신문』에는 ‘서사적 논설’이라 불리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의 서사들이 지면을 채우며 백성들을 계몽하고 있었다.<sup>8)</sup> 특히 당시 법에 대한 관념은 잡보란의 사건 기사들에서 구체적인 예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현식의 논의를 비롯하여 근대계몽기의 법을 다루는 논문들은 대부분 당시의 법 담론이 일관된 담론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균열을 읽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계몽주체들은 독자들을 국민으로 호출하려는 의식을 드러내는 다른 한 편에서, 그에 역행하는 근대이전의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논설을 비롯한 신문의 기사들이 단일한 담론으로 묶여지지 않는 것은 신문의 기사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많은 것들 즉, 개인의 무의식이나 사회통념들이 신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균열은 계몽의 대상인 독자들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즉 당대 독자들은 계몽주체의 의도에 맞게 법 규범을 준수하는 국민으로 호출되기도 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러한 균열들을 간과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의 일면만을 보는 편향된 분석이다. 계몽주체들의 담론이 독자들에게 가닿는 곳에서 발생하는 독자들의 균열지점(법 담론 준수와 위배)을 함께 살펴야지만, 계몽의 의도가 당대의 장에서 존재했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민일신문』에 법이 기사화 되어 독자들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담론의 구조로 보고 이상의 문제들을 해명하려 한다.<sup>9)</sup> 『민일신문』영인

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7) 김영민, 구장률, 이유미 엮음, 『근대 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 소명, 2003.

8) 신문에서 계몽담론이 집결되어 있는 곳은 주로 논설과 잡보란이다. 논설은 문명 이념과 제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했다면, 잡보는 전환기 시정세태의 생생한 보고 서로 기능하였다(고미숙, 『계몽의 담론, 계몽의 수사학』, 『문화과학』, 23호, 207쪽).

9) 담론을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글에서는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의미”(사라밀즈, 김부용 옮김, 『담론』, 인간사랑, 2001.)하는

본을 텍스트로 하여 서사적 논설은 물론이고, 기존 연구에서 배제시킨 잡보, 외국통신, 관보, 광고, 내보 등을 세밀하게 읽어가며 계몽주체의 의도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계몽주체와 독자들 내부의 균열을 분석하여 계몽의 담론이 당대의 장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전모를 확인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소설에 나타나는 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근대 계몽기의 신문에서부터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 II. 법 담론의 재배치와 담론주체의 균열

### 1. 법 담론의 재배치를 통해 평등한 국민 만들기

#### 1) 문명개화의 과제와 법률정비

『독립신문』을 비롯한 근대 계몽기의 신문들은 당시 유행하던 사회 진화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명개화’담론을 전개하였다.<sup>10)</sup> 당시 신문은

---

것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말하기와 글쓰기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담론은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론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장소와 그것을 만드는 담론의 주체, 그리고 실천하는 독자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담론의 주체란 화자의 자격, 화자의 제도적 지위 및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담론의 실천이란 화자의 의도대로 독자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민일신문』 담당자를 계몽담론을 생성하는 ‘담론의 주체’로 그리고 『민일신문』은 담론의 생성 장소로, 『민일신문』을 읽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담론의 실천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본적 토대는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이정우 옮김, 민음사, 2000)에서 빌어 왔다. 그리고 용어에 있어 “계몽주체”, “담론주체”, “『민일신문』 담당자” 등은 같은 의미로 쓰이며 백성을 말할 때도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던 “인민”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도록 하겠다.

10) ‘문명개화’는 본래 서구문명 내지 서구적 근대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용어로 ‘civilization’이 일본을 통해 번역되어 근대 계몽기에 수입된 것이다(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 매체와 근대·민족담론의 변화』,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

세계 각국을 문명개화한 국가와 미개한 국가로 나누면서 문명을 우승열패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독립신문』과 더불어 개화의 최첨단을 달렸던 『민일신문』담당자들에게도 문명개화는 당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법이었다. 그래서 『민일신문』담당자들은 문명개화의 전제 조건으로 근대적인 법제도의 시행을 강조한다. 또한 서양 각국과 동등한 자주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법률의 재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했다.<sup>11)</sup>

① 대명률과 대던회통이 우리 생각에는 아모리 공편하고 문명헌 법률인 듯 하나 지금 세상에는 이거슬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며 동등권을 차질수는 업스니 이른바 버리는 잇셔도 고기는 잡지 못하는 그물이라 흠이라

그러므로 불가불 법률을 밧비 곳쳐야 할지니 우리는 간절히 바라건디 우리 동포들은 이런 말을 듯고 다만 분하다고만 흘거시 아니라 이분헌 마음을 빼어 식여 잇지 말고 아모쥬록 고칠 도리를 생각하야 우리도 눈과귀치 귀약고 몇히 안에 세계에 동등권을 차출 도리를 차려뵈세다(『민일신문』26호, 1898, 5, 9, 논설 부분)<sup>12)</sup>

② 세상에 사름 하나 살기에 불가불 잇셔야 쓸것이 여러 가지라 첫지

는 역사, 2005, 3, 162쪽).

11) 이들이 법률정비를 통해 개화로 나아가려고한 것에 대해 황호덕은 “1876년을 기점으로 세계체제 혹은 만국공법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 조선으로서는 경제도 경제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정치문화적으로 자강自強하는 독립국 혹은 근대적 국가의 체모를 갖출 필요가 있었”(황호덕, 「국가와 언어, 근대 네이션과 그 재현양상들」, 『근대어·근대대체·근대문학』, 한기형외 지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14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조선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도 ‘만국공법’에 있었다. 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와도 대등한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제로 즉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왕현중,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 국가론」, 『한국문화』, 29호 2002, 6월, 260-262쪽 참조).

12) 강조는 인용자. 이후로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강조하겠음.

먹을 음식이오 들지 입을 의복이오 셋지 거처할 집이오 넷지 일용할 집 물이라 이 네가지중에 하나라도 업서서는 사람이 살슈 업는줄은 저마다 아는바이니 이 네가지 외에 더욱업지 못홀거시 혼가지 잇스니 이는 **곳 법률이라 (중략) 오늘날 쓰지 잔약하고 세력 업는재 목숨과 지산을 보호 하여 오기는 다만 나라에 법률혼 가지가 잇는 때문일라.**(『미일신문』55호, 1898, 6, 11 논설 부분)

인용문 ①의 필자는 대명률과 대전회통과 같은 구법이 있다하더라도 지금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법으로는 백성을 보호할 수도,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고 동등권을 찾기 위해 “법률을 밋비 곳쳐야” 한다고 말한다. 정비된 법(근대적인 법)에 대한 필요성은 인용문②에서 잘 드러난다. 계몽 담론의 주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식·옷·집·일용할 집물이 필요하지만, 이 네 가지 외에 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이 없다면 힘의 논리에 의해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지만, 법이 있다면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계몽기에는 이런 취지하에 근대적인 법이 공포된다.<sup>13)</sup> 근대적인

---

13) 당시에 공포된 법률을 경무청에서 『미일신문』을 통해 백성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은 아편연은 극히 해롭고 극히 폐단되는거시오 크게 위송에 히 하니 아편연 먹는 자들을 도져히 기형작득 해야 업증 홀 것이요 ○일은 무당과 신당에 기도하는거슬 낫낫치 통금하고 ○일은 미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업수히 너임과 절문이가 어룬을 업수히 너임과 권세를 의지하고 억지로 압제 하는일이 풍화에 크게 관계가 되니 저저히 잡아 업증 홀것이요 ○일은 방낙을 배푸러 계집을 유인해야 힘음 하는 놈은 인류의 말천이라 물건 도적 훈놈 보다 심 하니 낫낫치 잡아 중률노 다스릴 것이요 ◎일은 경향에 출몰 하며 거룻말을 전 해야 민민에 마음을 선동 하며 뇌물을 빙자하고 청축을 도모한 자는 듯는디로 잡아 업치 홀 것이요 ○일은 잡기는 도적의 근본이라 기형 포착 하되 와쥬도함게 잡아 업증 홀 것이요 ○일은 도로상에 휘주 하고 횡지가 부중 해야 다른 사람을 침척 하거나 언피 횡피 힘으로 무단히 야료 하며 구타하는 자는 보이는디로 잡아 다스리 것다고 하였더라 (『미일신문』159호, 1898, 11, 3, 잡보)

법의 내용들 중에 인민의 일상생활의 습속에 관한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아편을 금지하고, 무당과 신당에 대한 기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인민을 선동하거나 증거 없이 고소 고발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죄를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공포는 “나라 법이 엄명 하고 빅성의 마음이 안정케 함은 피류비들 금 함에 있고 인민을 보호 하며 리익을 힘쓰은 풍속에 순히 흐거슬 고침에” 법을 공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미일신문』에서 그 대표적인 경우로 꼽는 것이 관료와 백성들이다.

①**칙령으로 마련한 법률을 준형치 아니 하는자도 있다하며** 모부 관찰스는 벼슬이 갈날가 염녀하야 즈질노 하야곰 서울에 올녀 보니여 납뢰 청축 한다하며 각 군슈중에 구습을 곳치지 아니하고 호포와 결전과 호적지 갑과 무명잡세를 확정으로 가렴하야 즈기의 스탱을 치우고 돈량이나 잇고 무세력 한 빅성은 불효라 불묵이라 잡기라 강상이라 열거 장지슈지하야 전지를 빼아서 먹으며 정작 죄잇는 빅성은 죄의 경중은 물론하고 뒤구명으로 돈만 밧치면 빅방하며 막중흔 공전을 리속비와 부동하야 임의로 환롱하야 스스로히 식리도 하며 무곡도 하야 모리 하기로 위휴 하는고로 경년열세하야 상납이 건테되게 하니 엇지 통탄치 아니 하리오(『미일신문』74호, 1898, 7, 4, 논설 부분)

②**지금은 이전과달나 빅성들이 남의나라에 법률이북고 문명흔거슬 눈으로 보고 귀로 드른지라 나를보고 남의게 비고 하면 얼마큼 분고 붓그러 움이 잇슬거시니 빅성의 마음이다** 이러하고 보면 이전 폐단과 압제로 엇지 어거하리오 **법 맞호신 관인네들은 지극히 나라와빅성을 생각하야 아모조록 실천 신법 하시기를 웅망호오**(『미일신문』81호, 1898, 7, 22, 논설 부분)

『미일신문』에는 구관료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다. 인용문은 그 대표



적인 예이다. 근대 계몽기의 탐관오리들은 학정을 하고 가렴주구를 하며 공공연히 이 시대 만들어진 법을 비웃는다. 인용문은 탐관오리들의 반봉건적인 행위 중 특히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인용문 ②역시 관리들이 구법에 쫓아 새 법을 시행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지금은 이전과달나 백성들이 남의나라에 법률이뵈고 문명훈거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탐학 하는 관료들을 잘 따르지 않는다. 관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도 부끄러울 수 있으므로, 계몽의 주체는 관리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여 새로운 법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관리들도 문제지만 법을 모르는 백성들도 문제였다. 당시 백성들 대다수는 법을 몰라서 “법 밧게 일노 압제를 당하고도 말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법률이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혼긋 흐린 풍속만 죠흔줄노 알고 밥이나 먹으면 세상으로 알고”<sup>14)</sup>지내며, “동포 형테된지가 강하고 권리잇는 자의게 잡혀가 무리흔 육을 당하며 미를맛고 지산을 빼앗기느걸 보아도 늬의 일이니씩 내게 상관 업다고 말흔마디도 아니”한다.

## 2) 계몽 주체들의 법 담론 유포

이런 현실에서 계몽주체들은 신문 기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자만이 국민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알고 법을 지키라고 당부한다.

①나라에서 덩흔 법률 밧게일을 밧지 말기로 작덩하고 법에 범홀 일은 극히 죠심햐야 가면 **척지 국가법률을 직히는 어진빅성이 될거시오 들지 동포형테를 스랑하는 의리잇는 사람이 될터이니**(『미일신문』46호, 1898, 5, 31, 논설 부분)

14) 『미일신문』46호, 1898, 5, 31, 논설.

②법을 어긴자로 말할 디경이면 첫지 범률노 빅성의 부모되신 님군을 멸시 하는 역적이오 들지 국중에 범밧고 사는 동포를 해하는 전국에 원슈요 셋지 제부모 처자와 즈기 몸을 보호하여 주는 범률을 업시하니 즉 제 손으로 제목숨을 끄는세상에 어리석은 필부라 턴하에 용납지 못할 죄인(『미일신문』55호, 1898, 6, 11, 논설 부분)

①에서 계몽의 주체는 법을 지켜야만 어진 백성이 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②에서는 법을 어긴 자는 역적이고, 전국의 원수이며 천하에 용납지 못할 죄인으로까지 규정한다.<sup>15)</sup> 이런 대비된 규정을 통해 계몽주체들은 당시 백성들이 법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황해도 장연군에서 법 공부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하고<sup>16)</sup>,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법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sup>17)</sup> 그 외

15) 또한 법을 어긴자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 또한 “첫지법을 범하여 나의 님군을 능멸하는 역신을 보고 말 한마디 아니하니 이는 그 님군의 불충함이오 들지 동포를 해롭게 하는 원수를 그져두어 잔악한 동포가 원통함을 받게 하니 이는 인경과 의리에 틀린 천장부요 셋지 제목숨 과 부모 처자가 밧고 사는 범률을 룡히 보호치 못하여 생명과 지산을 의지할 디가 업시 되는 것을 분히 녀일 줄 모르니 이는 곳 인간에 흔 미련흔 버러지”(『미일신문』55호, 1898, 6, 11, 논설 부분)라고 말한다.

16) ○황해도 장연군 인민들이 서로 의론하기를 우리가 즈를 범허더리도 엇더흔 지에 엇더흔 룡을 당허여야 올흔지 알슈 업스니 지금 부터 나라에서 작덩흔 범률 세칙을 국문으로 번역허야 공부를 도져히 후후에 관장이 즈기 임의디로 빅성의 게 원통흔 일을 항허거던 죽기로써 시화 가면서라도 범밧겿 일은 아니 밧겿다고 허엿다니 우리나라 빅성들이 모다 장연 빅성 궂치 열닐디경이면 기명이 속히 될터 이라 우리는 장연군 인민들을 더허야 간절히 치하 호노라(『미일신문』44호, 1898, 5, 30, 잡보)

17) ○인천신보에 말허엿스되 양인 차례라 허는놈이 요리집에서 술을 먹다가 우리나라사람 수십명이 구경허는것을 총으로 노오미 그중에 한사람이 마져 탄알이 썩을듯고 비로 드러가 거의 죽게되엿다하니 그러케 악흔 오랑키놈을 당장에 설분못허엿스니 듯는자의게 분훈일이나 장춘 정부에서 범률디로 죠쳐 힐일너라(『협성회회보』제4호, 1898, 1, 22, 내보) 위의 내용은 서양 사람을 구경하는 조선인을 서양 사람이 총으로 쏘아 다 죽게 된 사연이다. “당장에 설분을 못허엿다”

에도 『미일신문』에는 무속숭배에 대한 금지와 노름 잡기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들이 있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수사(修辭)만으로 백성들에게 법이 내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몽주체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법 앞의 평등’과 ‘재판에서의 증거 원칙주의’, ‘탐학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내세워 독자들을 설득 시킨다.

①“.....더더 돈거리 하는 법이 **빙표와 증인이 잇셔야 법스에서 명확한 증거를 삼는 것인디** 송스가 증거업는 일을 억 울이결쳐 하였다하니 ...”(『미일신문』82호, 1898, 7, 23, 잡보)

②죄인을 취초할 때에 **증거을 분명히 차자** 의견으로 조목 조목이 물으면 뇌형보다 더 심 혼거시니 뇌형은 일병 업시하고 도적을 잡드리도 장경을 의지하야 본식으로 추장하고 적몰은 일병 폐지 하라고 하였다더라(『미일신문』159호, 1898, 11, 3, 잡보)

③투합통에 여러 빅장 편지드러 오는 것을 보와도 어니 디방관이 선치 하였단 말은 업고 모다 디방관의 잘못 하였다는 행위만 적어 보냈기로 **증거를 자세히 알슈 업는 것은** 아주 괴지치 아니 혼거이와(『미일신문』49호, 1898, 6, 4, 잡보)

먼저 재판에서 물질적인 증거를 근거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사실입증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장치가 확보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자백에 의한 사건해결이 많을

---

는 것은 사적인 폭력으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분한일이지만, 법률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건을 기록하는 기자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사적 폭력보다는 공적인 법률로써 사건을 해결하라는 담론을 유포시키는 것이다.

18) ○근일에 경무스 리츨구씨가 경넓고 축슈 혼는 것을 금 혼고로 소경들이 대단이 원망혼다 하니 소경이 사람을 속이고 지물을 빼아서 먹는거슬 알거시 터가 능히 길흉회복을 판단하여 늬을 잘되게혼는 술이 잇스면 엇지 경무스의 금함을 두러워 흐리오(『협성회회보』4호, 1898, 1, 22, 잡보) 그 외에 『미일신문』149호(1898, 10, 21), 150호(1898, 10, 22), 159호(1898, 11, 3)잡보 참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기에 허위자백이 많았고,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이들도 허다했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의 재판에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①과 ②는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③은 『미일신문』사에 지방관의 탐학을 진정하는 투서가 왔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신문에 기사로 내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미일신문』담당자들은 재판에 있어 증거와 증인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같이 억울한 판결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다음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이다. 조선시대에는 신분고하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가감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근대의 법은 평등사상을 기저로 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그것을 시행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안에서의 평등이란 감각을 낳으며 그 속에서 이전의 신민들은 동등한 주권자로서 ‘국민’으로 재탄생한다.<sup>20)</sup> 그래서 근대적인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국민이다. 법률이 상하 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유인이 홍재욱의 집을 누탈하려했던 사건이다. 1898년 5월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인 이유인이 독립협회 회원 홍재욱의 집을 누탈하려고 하여 민사소송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상소심을 담당한 고등재판소 판사 마준영은 이유인을 옹호하고 홍재욱을 변론하는 일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한 심리를 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회원들은 마준영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판단하여 그를 피고로 고등재판소에 형사재판을 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이유인은 독립협회 측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마준영역시 면관 되었다. 이에 대해

19)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음을 이탈리아의 외교관으로 조선에 체류했었던 로제티의 글에서 알 수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법의 가장 큰 거짓말이 한국에서도 주창되면서 곤장 형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악랄한 고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 역, 『포레아 포레아니』, 1996, 숲과나무, 263쪽).

20) 최현식, 『근대 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2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70쪽.

『미일신문』은 마준영과 이유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신는다. 그리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니 모든 국민이 믿고 따를 것을 주장한다.<sup>21)</sup>

마지막으로 탐학으로부터의 보호이다. 계몽의 주체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관리들을 감시 고발함으로써 관리들의 학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법률을 어기거나 국가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막아야 충심 있는 백성이 된다고 한다. 다음의 인용문에 그러한 생각이 잘 나타난다.

“남군을 위하여 죽겠다고 생각지 말고 다만 조고마흔 일이라도 공변 되히 국가의 유조홀 일어던 짜라가며 헝헝되 만일 엇던 사롭이 던지 빅성을 탐학헝거나 혹 법률을 어기여 국가를 해롭게 하는 지 잇거던 괴어히 반디햐 법외에 일과 악흔 형실을 못헝도록 익쓰는 사롭이 춤으로 남군을 스랑 햐야 충심잇는 빅성으로 아노라”(『미일신문』54호, 1898, 6, 10, 논설 부분)

이렇게 계몽주체들은 ‘재판에서의 증거 원칙주의’와 ‘법 앞의 평등’, ‘탐학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워 독자들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개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천만 인명의 생명이 기화하고 기화 아니 헝는디 달녇”<sup>22)</sup>다는 것이다. 계몽의 주체들은 법을 통해 서구와 같은 수준의 문명개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잔존하는 유교질서 - 담론주체의 균열

『미일신문』을 통해 계몽주체들은 근대적인 법 관념을 가질 것을 주장

21) “법률이란 자는 국민을 보호하는 혼 정직흔 큰도라 그런고로 빅성이 법을 범헝면 벌을 주고 관인이 법을 일혀도 쏘흔 이곳치 헝는 것이니 그런즉 전국인민이 밋어 직히는 배라”(『미일신문』61호, 1898, 6, 18, 논설 부분)

22) 『미일신문』74호, 1898, 7, 4, 논설 부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근대이전의 법 관념을 노출한다. 그들은 근대의 주창자였지만, 여전히 전근대적인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다음의 두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안성군수 윤영렬씨가 병당 여섯과 순포 셋을 다리고 밤에 양지 지 월동 등디에 가서 화적 마중군의 당류 세놈을 버렸는디 윤군수의 의관에 화철 궁기가 무수허더라 하니 윤씨가 빅성을 위허야 도적을 업시라고 죽을싸을 피치 안니하니 우리는 윤군수를 향 허야 대단히 치하 호노라(『미일신문』181호, 1898, 11, 29, 잡보)

『미일신문』에는 근대계몽기 당시에 나라를 어지럽히는 화적들에 대한 기사가 많다. 위의 인용문은 안성군수 윤영렬이 화적을 잡아 즉결처분한 것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해 『미일신문』 담당자들은 “윤군수를 향 허야 대단히 치하 호노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 당시에는 군수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화적들을 즉결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1895년(고종32년)에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어 재판기관을 지방 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 5개 종류로 체계화하였다.<sup>23)</sup> 이렇게 근대적인 법체제가 들어서면서 법의 판결을 받지 않고 죄인을 사사로이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고종은 법을 지켜 재판을 하지 않고 도적을 처벌한 지방수령들을 태형으로 다스린 예가 있다.<sup>24)</sup>

23) 도면희, 「갑오·광무연간의 재판제도」, 『역사와 현실』14호, 한국역사연구회, 1994, 229쪽.

24) 근대 계몽기에는 근대적인 재판절차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구래의 방식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부에서는 1896년 11월 27일 이러한 지방관들을 일괄 색출하여 처벌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주부 관찰사 이병훈, 강계부 관찰사 조승현, 의주부 관찰사, 조지현, 전주부 관찰사 조민희 등이 각각 당해 지방에서 체포한 동학 농민군을 법부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 처형하였다고 하여 모두 태형에 처하였다.(《法部來文》, (奎 17762) 제2권, 여기서는 도면희의 글에서 재인용 232쪽) 『미일신문』에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즉 법적으로는 지방관이 재판을 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용문에서는 근대적인 법을 알고 있는 계몽주체들조차도 즉결처분을 한 윤용렬을 “대단히 치하”하고 있다. 비록 화적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왕의 사형집행 승인을 받아서<sup>25)</sup>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처벌하는 것을 치하하는 것은 담론주체의 균열의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균열은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고 국민에게만 근대적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치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계몽주체는 비국민으로 호출되는 도적들에 대해서는 굳이 근대적인 법의 적용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다음의 예 또한 계몽주체의 무의식에 아직 전근대적인 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일신문』231호 잡보에는 윤소사가 자결한 사건이 실려 있다. 용안군 칠목동 사는 전 공주 군수 한종리가 출타한 사이에 그 집 격장에 사는 김윤식이 한씨의 부인 윤소사를 겁간하려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내가 법으로 그 놈의 원수를 갚겠다 흐거늘” 윤소사의 말이 “분기가 텅텅 흔디 어느 결을에 원수를 법으로 갚흐리요” 하며 자결을 하려고 하자 남편 한씨가 말렸다. 이에 윤소사가 피를 내어 한씨가 한번 더 출타하는 것처럼 꾸미고, 윤소사의 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김윤식을 잡았다. 윤소사가 때려죽이자고 했으나, 한씨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김윤식을 보냈다. 이에 부인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고 죽었다.

---

가 있다. “경상 북도 관찰스 엄세영씨는 삼년 증역홀 죄인을 십오년 증역을 식힌 고로 관찰스가 갈니고 쉬히 고등 지판소에서 잡아 온다고 흐고 함경북도 관찰스 도준우씨는 법부에 보고도 아니 흐고 죄인 정비 보니는 것을 천단히 흐엿다고 고등 지판소에서 쉬히 잡아다 조를 증판 흐다더라”(『미일신문』97호, 1898, 8, 19, 잡보)

25)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는 국왕에 의해 최종적인 사형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3월, 223쪽).

이 사건에 대해 『미일신문』기자는 “한종리씨가 만일 범물을 알 것 같으면 그부인의게 김가가 무례 혼일 형 흐라고 흘 쎄에 등시 흐야 죽이면 더살도 업는 법나요 그부인의 설원도 되는거슬”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스럽게 복수를 하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라는 담론을 유포했던 『미일신문』의 담당자들이 여전히 구법의 영향아래 놓여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강간을 풍속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했고 사적 폭력을 용인했던 전통사회의 사고방식<sup>26)</sup>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계몽주체들이 재판중심주의와 증거중심주의를 외치면서 근대적인 법을 준수할 것을 신문의 논설과 기타기사들을 통해 담론화 시켰다. 하지만 정작 재판도 않고 도적들을 즉결처분하는 것에 대해 치하하는 것이나 사적 폭력을 지지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담론 주체들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논설을 비롯한 신문의 기사에서 단일한 담론의 내용으로 묶여지지 않는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신문의 기사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사회통념이나 개인적인 가치관들이 무의식적으로 신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6) 조선시대 『대명률』에서는 모든 형벌의 적용에서 공적처벌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통과 강간에 있어서는 허용했다. “처가 간음한지 오랜 뒤에 간부를 칼로 찢러 죽인 자라도 특별히 사형에서 감하여 정배하라”는 숙종 16년의 수교(『신보수교집록』)와 “치마를 당긴 자나 밥을 같이 먹는 자가 그 남편에게 살해당한 경우는 옥사로 성립시키지 말라”는 영조연간의 수교(『추관지』)가 있었다(장병인,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와 비평』, 역사비평사, 2001, 가을, 244쪽). 특히 간통죄에 대해 이러한 사적 폭력을 허용한 사례가 조선시대에는 많았다.



### Ⅲ. 법 담론의 내면화와 담론 실천의 외부

#### 1. 법 담론의 내면화를 통해 동포애를 실천하는 국민 되기

계몽주체에 의해 유포된 근대적인 법 담론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되고 있었다. 이는 앞서 계몽주체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에게 득이 된다는 실질적인 이유로 내세운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탐학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관련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백성들이 법을 통해 탐학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일신문』의 계몽주체들은 법으로부터 불법적인 수탈과 억압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국의 인민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전처럼 민란을 일으키지 말고 법으로 정당하게 재판할 것을 권유했다. 일반 백성들은 계몽주체들의 이러한 주장을 따라 물리적 항쟁위주로 지방관에 대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판기구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방관에 대한 고발이다. 일반 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즉시 한성에 있는 고등재판소에 그 지역의 지방관의 비리를 고발하여 처벌 받게 하였다. 이는 1898년 이전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 정부대신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일신문』은 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

○김성군슈 한병희씨는 희군에 도임한지 슈년동안에 탐장흔 일이 만흔 고로 그 고을 빅성들이 법부에 호쇼 한미 법부에서 한군슈를 잡아 올너 방금 지판 홀터인디 한군슈가 원고 빅성들을 디혀 이걸히기를 특탈흔 돈과 이번에 호쇼흔 부비를 몰슈히 물어 줄거시니 지판을 말자 하여도 그 빅성들이 맞춘너 듯지안코 괴어히 지판히겠다 혼디 그 탐도 불법흔 일은 즈세이 치탐하여 괴지하려 혼노라(『미일신문』15호, 1898, 4, 26, 잡보)

◎ 장단 군슈 지낸 김영준씨가 도입흔지 칠팔삭이 되었스나 고을에 잇서 치정 혼지는 불과 십삼일 지음 되었는디 포흠 슈쇄라 칭하고 관소 비의게 토식흔 돈이 구만여량으로 각면 부민들을 무단이 죄로 억늑하야 형벌헛미 청전 바른 돈이 십여만냥이라 하고 희읍 칙실은 경무관 안환 씨의 아들인디 더욱 찬조하야 타학 하고 그 동리 민간에 토식흔 돈이 슈만냥이라 일음이 소동 하야 슈일 후에 **본읍 백성들이 상경 하야 장차 고등 재판소에 정소하라 혼다더라**(『미일신문』196호, 1898, 12, 16, 잡보)

위의 인용문①은 한병희씨의 탐학에 대해 백성들이 법부에 호소하니 한군수가 호소한 부비를 물어줄테니 재판을 하지 말자고 하여도 그 백성들이 기어코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 ②는 장단군수 김영준이 토색이 심하여 백성들이 고등재판소에 고발하러 간다는 내용이다.

○남대문안 칠간 안 사는 김춘근 이라 혼는 사름 이 일전 에 춤외 일 천 기와 좌반 춘치 일빅마리를 갖다가 친민소 걸인 들을 먹인다 하니 그런 사름 은 **춤 동포 스랑 혼는 마음이 도더 하더라**(『미일신문』95호, 1898, 8, 17, 광고)

○충청북도 회인군 사는 빅한갑 이라 혼는 사름이 집은 **간난 하되 어려운 사름 구제 하기를 도와 하야** 비 곱흔 사름 밤 주기와 발 버스 형인 신 주기를 잘 하더니 금춘에 린근동 기민 들의게 죽을 쑤어 먹이고 회인 문의 청주 등디에 기호를 진홀 하고 또 근동에 순산 하고 굴머 죽게 된 사름을 살너 더니 근처 사름 들이 이런 사름 은 고급 에 엮다고 거리 마다 비를 세우고 본군 군슈 가 각동 에 전령 하야 포장 하엿다 하니 춤 이러흔 사름 은 정부 에서도 포상홀만 하고 우리도 특별히 기지 하야 감사 혼 뜻슬 표 하노라(『미일신문』95호, 1898, 8, 17, 잡보)

이처럼 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은 “국가법률을 직히는 어진백성”이 되고 나아가 이는 곧 “동포형테를 스랑혼는 의리잇는 사름”이 된다.”<sup>27)</sup> 위

의 인용문은 법을 지킴으로써 동포애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미일신문』의 논설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는 담론이 언표내적인 힘을 얻어 독자들이 담론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한다. 제주 사는 김가란 사람이 십여 명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무역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다가 폭풍을 만났다. “수십인이 정신을 수습지 못할 즈음에 김가가 대한 태극 국기를 내어 높이 달고 하늘씩 축슈으며 흐는 말이 우리는 운수가 불길하야 만경창파에 파선을 만나 슈중 고힌이 되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은 억만년 즈췌 독립국이 되어지라”<sup>27)</sup>고 외쳤다. 바다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나라와 동포를 생각하는 것이다.<sup>29)</sup>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각성되는 장면들은 더욱더 극적이다. 여러 만민들이 충군애국하는 목적으로 밤낮으로 고등 재판소 앞을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다방골 사는 박소사는 “집을 팔아 돈 빅원을 보조금으로 보내”<sup>30)</sup>였고, 눈먼 걸인은 돈 칠푼을 보조 하였다. 사회적 약자들조차 국가를 위해 동포애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2. 규율되지 않는 사적인 욕망 - 담론 실천의 외부

백성들은 ‘동포애’를 보이는 근대적인 국민으로 호출되어 새로운 민족 국가의 국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근대적인 습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직 개인의 사유와 행동양식을 검열하고 관리하는 무의식의 차원에까지 계몽의 빛이 밝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적 욕망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다.

27) 『미일신문』46호, 1898, 5, 31, 논설 부분.

28) 『미일신문』233호, 1899, 2, 3, 잡보.

29) ‘국민’되기에 대한 열망은 일반백성들 뿐만 아니라 도둑과 자객들까지도 포섭한다. 『미일신문』232호(1899, 2, 2)에는 자객이 개과선천해서 착한 국민이 되는 얘기가 나온다.

30) 『미일신문』166호, 1898, 11, 11, 별보.

『매일신문』에서는 근대적인 법을 위반한 백성들의 모습을 세세히 보여 준다. 이를 무당, 술, 노름 그리고 사적 보복에 의한 폭력으로 나눠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당, 술, 노름 근대에 포섭되지 않는 사적인 욕망

①슈원군 사는 김성삼이가 무당이라 조청하고 귀신이 느렸다고 주문을 외으며 제집에 꽃땀이와 화상과 넘불 하는 제구를 싸아 두고 우미 혼 사람들도 하여금 지물을 드러 지양을 막고 복을 빌게 하여 세상을 흑 하게 하다가 경무청에 잡혔다더라 (『매일신문』 110호 잡보)

②남문밖 동의전골에 스는 옥동어머니라 하는 과부가 지금 나히 오십 여세나 되얏는디 술 장스를 하여 돈을 만이 모흔지라 몇칠전에 동문밖 탐골 승방에서 돈 룩칠천량을 드러 심지를 올니 는디 한편으로 또 무당을 드러 굿을 하다가 순산하는 순검에게 무당이 잡히여 동서로 드러 온즉 동서 서장 말이 굿하야 그곳에서 하지 말고 강 건너로 가서 호마 하고 즉시 노와 보니엿더니 그길노 나가서 각심절 에서 굿을 마져 호얏 다 하니 각심절이 강 건너 또 잇는지(『매일신문』110호, 1898, 9, 5, 잡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 계몽주체들이 내건 법률에는 미신을 믿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미신을 믿는 행위는 여전히 전하다. 『매일신문』은 미신을 믿다가 경무청에 갇히게 된 사건을 많이 실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당시에 미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히 하였다. 굿을 하는 무당도 잡혀가고 그것을 믿는 백성도 잡혀가 처벌받았다. 인용문 ①에는 무당이, ②에는 무당과 이를 믿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내용이 나타난다.<sup>31)</sup> 무당금지에 대한 법이 엄격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어기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고종도 명성황후의 무덤의 터가 좋지 않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엄청난 경비를 감수하면서 까지 옮겼다고 한다.<sup>32)</sup>

31) 이 외에도 『매일신문』139호(1898, 10, 10, 잡보)에도 미신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

32) 까를로 로제티, 앞의 책, 232쪽.

다음으로 술과 잡기를 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계몽의 주체들은 문명개화에 방해된다고 인식되는 완고한 유교사상이나 미신인 무속신앙<sup>33)</sup> 그리고 특히 술과 노름하는 것 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는 개인의 사적인 욕망이 국가전체를 위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술을 먹고 “야료 하다가 순검에게 붓들”<sup>34)</sup> 리기도 하고 심지어 송곳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술값을 주지 않고 야료를 부리다 교번소에 가서 순검을 때리기도 한다.<sup>35)</sup> 심지어 “소년들이 학문은 공부 하지 안이 하고 협창 음주 하다가” “소쥬 불이 나서”<sup>36)</sup> 병신이 되기도 한다.

노름도 마찬가지다. “게으른 산인회도 노름하려 가는 길은 부지런히”<sup>37)</sup>고, 순검이 “노름을 하다가 잡히여 파면을 식히고”<sup>38)</sup>, 심지어 노름을 하다 빚을 져서 “집문서를 전당잡히”<sup>39)</sup>기도 한다. 순검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대신의 집에서 노름을 하기도 하고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잡기판을 설치” 하고도 “들창 문안에 사름 둘을 파슈를 세우고 순검이 번듯 하면 노름 기계를 치여 업”<sup>40)</sup>이기도 한다.<sup>40)</sup>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순검이 “쥬야로 hing순하야 노름과 도적을 금 하니”, “다 안도 한다”<sup>41)</sup> 한쪽에서는 집문서를 맡기면서까지 숨어서 노름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한 노

33) 이에 대해 박노자는 ‘문명’에 방해되는 유교적인 의병이나 동학도, 무속인, 승려들 등은 탐관오리 등의 반(反)사회적 분자들은 국민에 포섭되지 못하고 “우리속의 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개화기의 국민담론과 그 곳의 타자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238쪽).

34) 『미일신문』202호, 1898, 12, 32, 잡보.

35) 술 먹고 행패부리는 것은 『미일신문』186호(1898, 12, 5), 130호(1898, 9, 29)잡보에 실려 있다.

36) 『미일신문』117호, 1898, 9, 14, 잡보.

37) 『미일신문』86호, 1898, 7, 28, 논설 부분.

38) 『미일신문』158호, 1898, 11, 2, 잡보.

39) 『미일신문』47호, 1898, 6, 2, 잡보.

40) 『미일신문』97호, 1898, 8, 19, 잡보.

41) 『미일신문』138호, 1898, 10, 8, 잡보.

름꾼을 잡는 순검을 보면서 안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매일신문』의 주체들은 개인의 취향과 기호까지도 규율하려고 끊임없이 법률의 준수를 역설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sup>42)</sup> 이렇게 볼 때 근대 계몽기 당시의 근대적인 법은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성(假想性)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즉, 관념성을 띤 이념적인 것으로 앞으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이었지 현실에서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법보다는 주먹·사적인 폭력에 의한 보복

근대 이전의 법집행은 주로 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소송을 통한 법적인 해결보다는 개인적인 힘을 이용한 해결이 더 많았다.<sup>44)</sup> 또한 재판기관의 판결이 소송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어 재판관이 권문세가의 청탁이나 인정에 구애되어 판결을 그르치거나 판결을 내리기가 난처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뇌물을 받고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공연하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거나 제출된 증거서류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결 하였다. 권문세가의 횡포와 토색질이 만연하여 상, 천민이 토지를 빼앗긴 경우에도 약탈자가 권문세가일 경우 재판관은 관망하고 송사에 주저하며 세월만 보냈다.

이러한 상황이 개화기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

42) 근대 계몽기의 금융주의적 수사학에 대해서는 정여울의 글(『근대계몽기 민족담론의 경계와 그 균열』, 『한국근대문학연구』제8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3) 29-33쪽 참조.

43) 유진식, 『한국의 근대법(=가상현실) 수용의 단면(斷面)』, 『법사학연구』제32호, 한국법사학회, 2005.10, 72쪽.

44) 조선시대에 사적인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우선시한 것은 법보다는 예를 중시한 측면 때문도 있지만, 박노자는 “전근대의 경우에는 물리력이 강력한 공포심을 심어줄 만한 공적·사적 폭력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노정돼 피지배층의 분노를 눌러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박노자,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인물과사상사, 2005, 8쪽).

전히 백성들은 관리들의 학정에 시달려야 했으며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바라기는 힘들었다. 개화기의 많은 백성들은 아직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법에 호소하지 않고 직접복수를 한 국가형제의 얘기와 같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국가 형제에 대한 얘기는 『미일신문』67호 77호 92호 95호 192호 211호, 223호 잡보란에 계속해서 기재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가형제의 아버지 ‘국홍묵’이 ‘동학난’ 때에 김형순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국가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위해 김형순을 사사로히 잡아 고문한 결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정진사의 의뢰를 받고 국홍묵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국가형제는 정진사를 잡아서 고문을 하게 되고 이것이 관에 알려져 김형순, 정인악(정진사), 국가형제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다. 그런데 재판소에 가기도 전에 국가형제가 정진사를 길거리에서 죽인다. 재판을 통한 정당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사롭게 복수를 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형제들은 한성 재판소로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홍묵 형제는 아비의 원수를 갚기위해 정인악을 죽인 것이므로 선처를 호소한다.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는 친숙이 피해자가 된 범죄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자손은 복수를 하는 것이 도리라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하여 복수한 자에게는 형을 감하였다. 즉 자신의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식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구타, 치사한 경우는 불문에 붙였으며 아비의 피살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범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을 감하고 징배하도록 하였다.<sup>45)</sup> 이러한 전근대적인 인식이 근대계몽기에도 계속남아 있었기 때문에 국가 형제는 “지판도 않고 보방”된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법에 호소하지 않고 사적인 폭력으로 해결하는

45) 성낙현, 「조선시대 法意識과 刑事司法」, 『민족문화논총』33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6, 6, 13쪽.

사건은 미일신문 곳곳에 등장한다. 또 다른 예로 박부인과 문부인의 치사사건이 있다. 박철성이라는 사람의 모친이 동네 응좌수와 서윤철의 처김씨가 간통했다는 이야기를 김부인의 어머니 박부인에게 하면서, 문부인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꾸며 말했다. 박철성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김부인과 박부인 등이 화를 참지 못하고 문부인을 찾아가 항의하고 발로 밟는 등 구타하여 임신 중이던 문부인이 그날 밤 유산 후 사망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문부인의 아들, 남편, 시동생 등 서씨 집안에서 격분하여 원수를 갚는다며 가해자 박부인을 구타 살해 했다.

이상의 신문기사는 당시 백성들의 사고를 잘 보여준다. 백성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전근대적인 유교윤리가 근대적인 법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계몽기의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이러한 사적인 보복에서 야기 된 것이다. 사회의 제도적 장치에 기대지 않는 개인들의 직접적인 행동은 당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여기서 다시한번 법은 당위으로써 존재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이중성은 신소설에도 드러난다.

신소설에는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 많다. 그래서 근대적인 재판과정을 다룬 신소설도 꽤 된다. 근대적 재판과정이 다루어진 작품으로는 <구마검>, <화세계>, <구의산>, <봉선화>, <소학령>, <비파성>, <추월색>, <안의성>, <금강문>, <춘몽> 등이 있다. 신소설에 있어서 재판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권선징악을 대신 한 것으로, 악행은 징계를 받는다는 관념을 합법적인 재판이나 형법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그러나 신소설에서 개화된 시대의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구시대의 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대부분이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적인 폭력으로 보복을 하는 형태를 보인다.<sup>47)</sup> 이는 근대

46)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76-78쪽.

47) <구의성>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처와 비복들의 흥겨와 음모로 인해 첩으로 들어간 춘천집이 참혹하게 살해당하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딸



계몽기에 근대적인 법의 규율이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근대적인 법이 제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있었던 것은 전근대적인 법의식이었던 것이다.

#### IV. 근대 계몽기 - 역동적인 생성의 장

근대계몽기는 계몽의 열망이 넘치는 시기이다. 또한 근대 계몽기는 한국 근대의 기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근대적인 코드화가 전일적으로 관철되지 않은 역동적 생성의 장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시점이다. 이 시기를 주도한 이념은 문명개화이고 그것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법률과 교육이라는 제도였다. 법이 문명개화의 제도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었다면 교육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었다. 이 글에서는 문명개화의 전제가 되는 법에 대한 담론을 『미일신문』담당자들이 ‘인민’에게 어떻게 유포시키려는가를 살핀 뒤, 그에 포섭되지 않는 균열의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몽의 주체들은 근대적인 법을 지키면 증거위주의 재판관을 받게 됨으로써 억울한 옥살이를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근대적인 법은 양반과 평민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담론을 유포시킨다. 그러나 이런 담론을 유포하는 계몽의 주체들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운 처벌을 하는 지방 관리를 치하하거나 사적인 폭력을 지지했다.

다음으로 『미일신문』의 독자들은 법을 지키기 않는 관리들의 부정부

---

을 김승지에게 첩으로 넣었던 강동지가 차례차례 가해자들을 죽이고 도망치는 얘기다. 이때 춘천집의 아버지 강동지는 근대적인 개념의 재판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사적인 폭력에 의한 복수를 한다. 이처럼 근대를 지향하면서도 전근대적인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는 신소설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패를 고발하고 나아가 동포애를 실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무속을 믿어 굿을 하기도 하고, 노름과 잡기에 빠지며, 술을 먹고 야료를 부리는 등 그들의 사적인 욕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처벌을 두려워하면서까지 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근대적인 법의식이 아직까지는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계몽주체가 범 담론을 신문을 통해 유포시키고 독자들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까지 근대적인 사고의 틀이 완전히 여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인 법 담론이 아직 개인의 사유와 행동양식을 검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열은 근대 넘어서기를 모색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균열은 근대가 행사하는 폭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려고 하는 주체들의 욕망의 지점인 것이다.

근대 계몽기의 『미일신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법의식의 균열은 신소설로 이어진다. 신소설에서는 갑오경장이전의 구법에 대해 비판하고 갑오경장이후의 근대적인 신법에 대해 찬양하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전근대적인 방법인 사적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신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겠다.

주제어 : 법 담론, 내면화, 계몽의 외부, 근대 계몽기, 담론의 주체, 담론의 실천, 문명개화, 균열

## 참고문헌

### 1. 자료

『협성회회보』

『미일신문』

### 2. 참고논저

고미숙, 「계몽의 담론, 계몽의 수사학」, 『문화과학』23호, 문화과학사, 2000, 203-216쪽.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김재문, 「한말에 있어서의 법제와 법의식의 변화」, 『일본제국주의와 한말의 사회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0.

도면희, 「갑오·광무연간의 재판제도」, 『역사와 현실』, 14호, 1994, 227-245쪽.

박노자, 「개화기의 국민담론과 그 곳의 타자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박노자,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인물과 사상사, 2005.

백동현, 「대한 제국기 언론 매체와 근대·민족담론의 변화」, 『내일을 여는 역사』, 제19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5, 160-175쪽.

성낙현, 「조선시대 法意識과 刑事司法」, 『민족문화논총』, 33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6, 3-32쪽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3, 214-233쪽.

왕현중,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 국가론」, 『한국문화』, 29호 2002, 6월

유진식, 「한국의 근대법(=가상현실) 수용의 단면(斷面)」, 『법사학연구』,

제32호, 한국법사학회, 69-96쪽.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이진구, 「개화기신문의 여론형성에 미친 영향-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장병인,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와 비평』, 역  
사비평사, 2001, 가을, 228-249쪽.

정여울, 「근대계몽기 민족 담론의 경계와 그 균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8호, 한국근대문학회, 2003, 9-46쪽.

조규창, 「법과 신뢰」,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김인영 편, 소화,  
2002.

차배근,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 『언론과 사회』, 제  
14호, 언론과 사회사, 1996 겨울, 5-33쪽.

최현식, 「근대 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  
성」, 『현대문학의 연구』, 2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63-197쪽.

황정현, 「『미일신문』소재 단형서사문학연구」,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문  
학연구』,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소명, 2005.

황호덕, 「국가와 언어, 근대 네이션과 그 재현 양상들」, 『근대어·근대매  
체·근대문학』, 한기형외 지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역, 『꼬레아 꼬레아니』, 숲과나무, 199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출판사, 2002.

사라밀즈, 김부용 옮김, 『담론』, 인간사랑, 2001.

미셸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Abstract>

## Law Discourse of Enlightenment Era in Modern Korea and Aspect of the Crack

Lim, Hoe-Rock

In enlightenment Era in modern korea, it was newspaper that civilization highbrows observe for the first time as groping transfiguration to modern age community. Newspaper acted important role creating reassignment of existing discourse and new discourse through new class of readers' formation and wide use of national script for the nation that did not exist before. Through newspaper, illuminatis were going to make modernistic nation-stage. Specially, Ideology which lead to be is civilization and it was system of law and education that accomplish its base. If art became systematic precondition of civilization, education was method to execute it.

Is writing that examine whether do so that subjects of enlightenment through 『Maeil Sinmun』(Newspaper every day) may get abroad discourse about method that become proposition of civilization in eagle to peoples how. Also, in intention of enlightenment bringing round writing that examine retroaction castle of modern age enlightenment flag clearing point of crack that is not done be .Its contents are as following. First, burdens of enlightenment talk that can escape mortified prison life receiving justice of evidence center if keep modernistic law through 『Maeil Sinmun』(Newspaper every day). Also, speak that modernistic process is equal in front of

law everybody that do not allow distinction in social position. But, Subject of discourse looks attitude which praise local government official who punish criminals who do not keep law privately or support personal violence. This shows that subjects of enlightenment that get abroad law discourse are not escaping in traditional Confucian ideas.

By next time, readers of 『Maeil Sinmun』(Newspaper every day) rebirth to modernistic body politic through internalization of law discourse. So, readers of 『Maeil Sinmun』(Newspaper every day) are going to prosecute and advance administrations'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which do not keep law and realize brotherly love. But, everyday life exorcise, and fall gambling and miscellaneous games, and drink wine believing radish continuation still and work disturbance and part connected with their personal desire did action that oppose law fearing punishment. This shows that modernistic Buddhist priest's robe was not internalized perfectly to everyday life of people up to now.

In this way, it dwindles yet that readers' crack shows at process that practice crack and this of enlightenment subject that do to get abroad law discourse through 『Maeil Sinmun』(Newspaper every day) show that frame of modernistic accident was not formed perfectly. That is, can know that modernistic law discourse did not tell to level that inspect and manages individual's reason and behavior pattern yet. If enlightenment Era in modern korea is time that South Korea modern origin is formed, crack that look at this time gives one suggestion standpoint to us which grope to pass over modern age. Rupture is that is point of desire of subjects that is going to run

away constantly from violence that modern age uses.

Key Words : Civilization, law discourse, Enlightenment Era in modern korea, Internalization, Outside of enlightenment, Subject of discourse, Practice of discourse, 『Maeil Sinmun』